

#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강서구 제4선거구 출신 김용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성별영향평가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 요소 및 발생원인 등을 체계적·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개선함으로써 실질적 성평등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평가도구입니다.

이에 성별영향평가의 보다 효율적 운영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 법률에 위임된 시장의 책무를 조례에 명시하고,

효율적 실시를 위해 성별영향평가업무를 총괄하는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을 여성가족정책실장으로 명시함으로써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그 책무성을 강화하고 타당성 확보 및 정책적 효과성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3항 및 제3항을 신설하여 시장의 책무를 추가하고, 안 제18조제1항에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을 여성가족정책실장으로 명시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 개정 취지를 이해하셔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며,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